

경 기 도

혼계요구 및 통보

제 목 업무용 차량 업무 이외 목적 사용

소 관 기 관 경기주택도시공사 () 사업단, () 단, () 처)

조 치 기 관 경기주택도시공사 () 실)

대 상 자 ① () 사업단 () 직 급 () (19)

② () 사업단 () (19)

③ () 사업단 () (19)

④ () 단() () (19)

⑤ () 처 () (19)

내 용

위 사람들 중 ()은 2017. 2. ()부터 현재까지, ()은 2020. 3. ()부터 현재까지, ()은 2021. 2. ()부터 현재까지 GH () 사업단에서 근무중이며 ()은 2021. 8. ()부터 현재까지 () 단()에서, ()은 2021. 2. ()부터 현재까지 GH () 처 () 부에서 근무하고 있다.

경기주택도시공사(이하 'GH'라 한다) 「취업규정」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

「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규정」 제9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.

또한, GH 「업무용차량 관리규정」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은 사업소 주차장내에 주차하도록 조치하고,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.

한편, GH ()부에서는 2021. 3.24. 「부서별 업무용차량 출장시 주의사항 전파 등 협조 요청(()부-1279)」를 통하여 '출장(배차)없는 운행, 업무 시간외 운행, 주말

운행 등 업무 연관성 없는 운행 금지' 등 업무용 차량의 사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시달하였다.

따라서, 위 사람들은 공사의 제규정 등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업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등이 없어야 했다.

1. []의 경우

그런데도, 위 사람은 2021. 5. [] 척추 수술로 인한 거동이 불편하여 직속 상급자인 [] 사업단 [] 장을 거쳐 사업단장으로부터 허락¹⁾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1. 6. [] ~ 9. [] 까지 총 40회에 걸쳐 배차신청도 받지 않고 업무용 차량(니로 128하 [] 128하 [] 등)을 사용하여 사무실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직원 숙소([] [], 편도 3km)까지 출퇴근 등을 하였고, 3회에 걸쳐 음식점 등을 방문하였다.

2. [], []의 경우

위 사람들은 [] (편도 1.2km)에 마련된 직원 숙소를 같이 사용하면서, []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였다.

그러던 중 위 [] 소유의 차량이 일시 부재였던 2021. 8. []에는 야간 업무와 우천 사유로, 같은 해 9. []은 야간 근무 후 교통 편의 등 사유로 배차신청도 받지 않고 업무용 차량(니로 128하 [])을 사용하여 출퇴근 등을 하였고, 음식점 등을 방문하였다.

3. []의 경우

위 사람은 2021. 8. [] 10:30~16:00까지 “[] []” 관련 GH 본사(수원시 권선동 소재)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 차량(니로 128하 [])을 사용하였다.

그러던 중 위 사람은 퇴근시간인 16:00(시차출근제 근무, 07:00 ~ 16:00)가 경과 하자 사무실(GH [] 사업단 내)로 복귀하지 아니한 채, 위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여 [] 인근에 위치한 [] 구 소재 자택으로 바로 퇴근한 후, 그 다음날 사무실로 출근하였다.

1) 자택 인근 운동장에서 운동 중 허리를 다쳐, 2021. 5. [] 병원에서 허리수술(전치 6주 진단)을 하였으나, 2021. 6. [] 공사의 준공이 시급하여 사무실로 출근

4. [] 의 경우

위 사람은 2021. 9. [] 업무용 차량(니로 128하 []) 을 이용하여 [] 시 소재 [] 관련 업무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퇴근시간이 경과하자 위 업무용 차량으로 바로 [] 동 소재 자택으로 퇴근한 후 같은 해 9. [] 사무실로 출근하였다.

그 결과 위 사람들은 아래 【표】와 같이 배차신청도 받지 않은 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·퇴근 등을 함으로써 근무기강 등을 저해하였다.

【표】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횟수 현황(단위 : 회)

직 원 명(직급)	소계	출·퇴근	점심 이용	저녁 이용	카페 이용	편의점 이용	기타
[] 급)	45	40	3	1	1		
[]	15	2	2	4	5	2	
[]	16	2	3	4	6		1
[]	1	1					
[]	1	1					

관련자 주장 및 판단

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업무용 차량으로 출·퇴근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.

따라서, 위 사람들의 행위는 GH 「취업규정」 제6조(성실의무) 등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「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」 제6조(처분사유) 등에 해당한다.

조치할 사항 경기주택도시공사장은

- ① 위 [], [], [], [], [] 에 대하여 GH 「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」에 따라 『훈계』 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※ 2021. 8. .1 ~ 2021. 9. 3.까지 배차신청도 받지 않고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여 불임

참고와 같이 음식점 등을 이용한 [] 부 [] 등 14명에 대하여는 근거리 사용인 점 등을 감안, 금회에 한하여 문책 생략

- ② 앞으로 소속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업무용 차량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(통보)